

#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61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업무에 대한 군민 신뢰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, 제명 변경함.

○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⇒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변경함(안 제1조)

다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에 부합되게 내용을 변경함(안 제2조)

○ 위원회 명칭 및 조 제목 변경, 위원 수를 규정(민간위원 1/3이상)

라. 조례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 수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
마. 위원회 관련 자구 수정함(안 제5조)

○ 회의 소집 절차 및 미비한 내용 보완

바. 법령 중복·재기재 사항 삭제함(구 조례 제2조·제3조, 제11조~제13조)

○ 기금의 재원·용도, 기금의 관리운용, 기금관리 공무원,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

○ 근거: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·제62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~제8조, 제13조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,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62조제7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4. 24.~5. 15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경남도내 개정완료(5): 거제, 김해, 창원, 통영, 창원

(7) 법제처 입법컨설팅: 전부 반영함.

##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민원봉사실장

2.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

가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

나.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망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

어려운 경우

2.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.